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475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4756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133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김민혜, 안상철, 강성률

변론 종결 2024. 10. 4.

판결 선고 2024. 11. 22.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133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53,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분과 판결 정보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보를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7.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보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이후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3. 9.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3. 9. 6.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과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3.경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7.경 C로부터 위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이자 채권을 전부 양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를 263,000,000원으로 확정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그에 대한 이자는 월 1.5%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7. 2. 9.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341,900,000원으로 정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 2. 9. 접수 제985호로 원고 소유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3) 원고는 2018. 9. 10.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이자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2. 12.에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대여금액 347,266,667원, 대여일 2018. 10. 19., 변제일 2020. 10. 18., 이자 월 4,000,000원,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325호로 위와 같은 내용 및 조건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원고는 2019.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이자로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9. 1. 2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9 내지 14번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9년 제1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1)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9. 11. 13. 춘천지방법원 F로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3. 3.경에는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H로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들'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0. 6. 5. I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353,9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나머지 46,1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3)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금 353,9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최고액 341,900,000원 + 12,000,000원(경매비용)}을 정히 영수하는 바입니다.(단, 위 금원은 영수인의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해지증서를 각 교부하였다.

4) 2020.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 내지 8번에 관하여는 2020. 6. 5. 해지를 원인으로, 순번 제9 내지 14번에 관하여는 2020. 6. 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 내지 8번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권자 I으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2020. 6. 8.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들을 모두 취하하였다.

라. 관련 사건들의 경과 및 피고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압류·추심

1) 원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기재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2021.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1400호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기재 대여원리금 합계 416,876,712원에서 피고의 이자소득세 29,219,178원을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387,657,534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2021. 9. 28.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1262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채무명의에 따라 '이 사건 제2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2021. 10. 1. 같은 법원 2021카정15호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021. 10. 19. 춘천지방법원은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원고의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 제21983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22. 5. 11. 이 사건 제2 청구이의 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22. 6. 27.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카담27호), 이에 대한 결정이 2022.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2022가합30921호로 청구이이의 소(이하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채무명의를 따라 '이 사건 제1 청구이이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이이의 소장부분이 2022. 7.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제1 청구이이의 소장에는 '① 원고와 피고는 2020. 6.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들에 대한 경매비용으로 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고가 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 원리금 합계를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41,9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341,900,000원에 경매비용 12,000,000원을 더한 합계 353,9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소장부분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자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인 2022. 6. 22.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22타채60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22. 6. 30.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 정본은 2022. 7. 4.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위 결정을 바탕으로 2022. 7. 20. 원고가 공탁하였던 공탁금 및 이자 합계 50,031,76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출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 38 내지 43호증, 을 제2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탁금 50,031,764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20. 6.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들에 대한 경매비용으로 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고가 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 원리금 합계를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41,9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341,900,000원에 경매비용 12,000,000원을 더한 합계 353,9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추심해간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50,031,764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20. 6. 5. 원고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을 341,900,000원으로 확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는 원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을 수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을 뿐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채권최고액만큼만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추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20. 6.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들에 대한 경매비용으로 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고가 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의 원리금 합계를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41,9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341,900,000원에 경매비용 12,000,000원을 더한 합계 353,9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제로 이미 소멸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추심한 이 사건 공탁금 50,031,764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50,031,764원 상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20. 6. 5. I으로부터 합계 400,000,000원을 연 2%의 이율로 차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는 353,9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46,100,000원은 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을 341,900,000원으로 확정하는 합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I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연 2%라는 이율로 차용하였음에도 위 400,000,000원을 더 높은 이율(월 1.5%, 연 18%)을 부담하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변제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J은, 자신이 I의 대리인으로서 2020. 6. 5.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피고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처럼 보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I이 대여하는 400,000,000원 중 341,900,000원은 피고가, 나머지 46,100,000원은 원고가 각 수령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리금액이 이 사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채권최고액만을 변제받고 잔여채권이 존재함에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는 일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20. 6. 5.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갑 제23호증) 및 각 근저당권 해지증서(갑 제24, 25호증)에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잔여 원리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후 피고와 원고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잔여 원리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341,9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6. 8.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들을 모두 취하하였다.

마) 2022. 6. 22.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22타채6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관한 변제를 독촉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상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387,657,534원을 공탁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공탁금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권의 잔여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3. 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잔여 원리금을 청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5005호)을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본 263,000,000원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원본 347,266,667원은 모두 그 때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원본으로 정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상의 복리금지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존재하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0. 6. 5.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인 341,900,000원이 그 때까지 피고가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던 원리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제1 청구이의 소송과 이 사건은 그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이라 할 것인데, 확정된 이 사건 제1 청구이이의 소 판결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이 2020. 6. 5.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제1 청구이의 소송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제1 청구이이의 소 소장부분을 관계가 파탄 난 전처인 K이 수령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청구이이의 소 우편송달통지서에는 K이 2002. 7.경 원고와 이혼하였음에도 자신을 피고의 '배우자'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2016. 8. 4. 이래 계속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1 청구이이의 소 소장부분이 송달된 주소인 '서울 용산구 L, 지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청구이이의 소의 송달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 2,921,910원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기재 대여원리금 합계 416,876,712원을 공탁할 당시 지방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 2,921,91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납부한 세금이 피고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인지 확실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에게 위 지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잔존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소멸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기재 대여원리금 합계 416,876,712원에서 피고의 이자소득세 29,219,178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21. 11. 30. 인제군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이 29,219,178원으로 위 이자소득세 금액과 동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21. 11. 30. 인제군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2,921,910원¹⁾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00조의13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기재 대여원리금 합계 416,876,712원을 공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어야 할 피고의 지방소득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지방소득세 2,921,910원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가)항 기재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채권으로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20. 6. 5. 원고와 피고의 정산 합의 및 그에 따른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52,953,674원 (50,031,764원 + 2,92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장성학

판사송경호

판사정상규

별지

1) 원고는 지방소득세로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3,503,060원을 인제군에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지방소득세 원본인 2,921,910원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금액에 한정하여 살핀다.